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. 6. 30 선고 2019가단5954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6. 23

판결 선고 2020. 6. 30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. 10. 17.접수 제513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C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(이하 '이 사건 차용금'이라 한다) 채무의 담보로, 2005.10. 17. 피고에게 자기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51320호로 채권최고액 1억 5,000만 원인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.

나. 원고는 2007. 10. 23.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기로하고, "원고는 2007. 11. 23.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고 피고는 위 차용 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다.

"라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.

다. 원고는 2007. 10. 24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원고는 2008년 초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.

마. 피고는 2017. 11. 20.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6943호로 이 사건 차용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.

위 법원은 2018. 5. 29. '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6,000만 원을 지급하라.

'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.

위 판결은 2018. 6. 15. 그대로 확정 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, 을 제1서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이 주장

가. 원고

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

피고는 2007. 10. 23.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이래 원고에게 수차례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

왔고,이후 일부 금원을 변제받기도 하였으며,2017년에는 원고를 상 대로 이 사건 차용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.

따 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.

3. 판단

가.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. 10. 17. 이 사 건

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.

그리고 이 사건 차용금 채권 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이다.

그런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5. 10. 17.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. 12. 18.

제기되었 음은 기록상 분명하다.

나.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원고가 2007. 10. 23.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기로

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고, 원고는 2008 년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

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, 피고는 2017. 11. 20. 원고 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

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,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은 이유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의회영

별지